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Fee Assessment Standards and Procedures

자본시장법 제58조 · 수수료 부과공시

릿지자산운용 주식회사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수수료)에 근거하여 릿지자산운용(주)(이하 “회사”라 한다)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계약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수수료”라 함은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일임자산·투자자문자산에 적용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아래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1. 보수

가. 운용보수: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자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나.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 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법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령 가능)

다. 판매회사 보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라. 신탁업자 보수: 집합투자증권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자산 보관자로서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마.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또는 회사운영을 대신해준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2. 수수료

가. 판매수수료: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

나. 환매수수료: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 등을 기준으로 투자자로부터 받아 집합투자재산에 귀속시키는 금전

다. 일임수수료: 회사가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는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라. 자문수수료: 회사가 투자자의 자산운영을 위한 자문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제4조(수수료의 부과기준)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모 집합투자기구와 투자일임·투자자문자산 간에 정당한 사유 없는 수수료 차별은 금지된다.

③ 새로운 종류형 상품의 보수 및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상품의 비용과 수익의 수준을 일관되게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한다.

제5조(수수료의 부과절차)

① 회사가 집합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의 비율 또는 금액, 그 부과절차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는 새로운 유형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수수료의 비율 또는 금액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다만, 기존 상품과 운용상의 중요한 변경이 없는 유사한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신규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의 합의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총비용의 조절 또는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설명의무)

회사는 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고지)

① 회사는 투자광고(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인상)

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의 인상을 위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 제19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공시)

회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이 기준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